

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12월 18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

국방부장관

정 경 두

●법률 제15983호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 전단 중 “기명날인하여야”를 “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7조 중 “기명날인하여야”를 “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”로 한다.

제49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제47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
- 2. 제47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

별표 중 육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육 군	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제1군단사령부 제2군단사령부 제3군단사령부 제5군단사령부 제6군단사령부 제7군단사령부 제8군단사령부 수도군단사령부
-----	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중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명에 관한 적용례) 제93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군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 군사법원 및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.

#### ◇개정이유

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군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,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등 「형사소송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## ◇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(제93조 및 제107조).
- 나.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(제490조).
- 다.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 창설될 예정이므로,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함(별표).

<법제처 제공>